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가합10078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김상용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화

담당변호사 진채현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4.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3,89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도심형 모빌리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두 번째 거시부터는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지칭한다)는 D 주식회사에 변속기를 공급하는 E 주식회사¹⁾의 협력업체이다. 원고는 C에 F 모터(F Motor, 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2)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부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년경 자체적으로 이 사건 모터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 사출형 커넥터 와이어 어셈블리(Connector Wire Assy)(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였다. 이 사건 부품은 크게 G용과 H용으로 나뉜다.

2)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위 I 등은 2014. 8.경 원고에게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중 G에 관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도면을 제공하면 피고는 그 도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품을 제작한 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대상에 이 사건 부품 중 6속 커넥터용도 포함시킴으로써 그 거래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이하 생략)

②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기간

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이하 생략)

제36조(거래정지의 예고)

제35조2)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

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

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피고는 2015. 1.경부터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에 따른 원고의 발주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관절차 협조 약속

피고가 2017. 9.경 이 사건 부품의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2017. 12. 5.경 원고와 피고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피고의 K 상무는 회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품에 관한 공급업체변경 및

양산이관 절차(이하 '이관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관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

라. 피고의 공급중단 통보 및 공급단가인상 합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8. 4. 25.경 원고에게 구두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자 하니 약

2개월 이내에 이관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5. 8.경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자 하니, 2018. 6. 22.까지 이관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하 피고의 위 중단통보를 통틀어 '이 사건 중단통보'라 한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16.경 공급단가 추가 인상 등 거래 계속 방안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7.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거래는 불가능하고,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의 계속을 요청하면서, 설비 매입 없이 3) 700,000,000원 내지 900,000,000원의 설비대금 지급 및 공급단가 5~7% 인상 등의 조건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이에도 응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8. 6.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중 G의 공급단가 12% 인상 및 설비 매입 없이 1,000,000,000원의 설비매입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2018. 11. 30.까지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 L는 2018. 6. 17.경 피고의 대표이사 M에게 '서로 소통부족으로 생긴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추는 것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동반할 수 있으니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이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 계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6. 19.경 '이 사건 거래기간을 2018. 11. 30.까지로 연장하되, 위 거래기간 동안 공급되는 이 사건 부품 중 G의 공급단가를 12% 인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의 이행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1. 3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당시 인상한 공급단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2. 및 201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각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19. 4.경 '피고는 이관절차에 필요한 유예기간의 부여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원고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설비변상금 내지 공급단가 인상분 명목으로 합계 1,483,893,52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 M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고소하였다.

2) 그러나 검사는 2019. 8. 22.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업체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편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 중단을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부터 설비변상금 및 단가인상분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20초재254호), 위 법원은 2021. 8. 17.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5, 23, 25, 28, 30 내지 34, 36 내지 40, 42, 53, 54호증, 을 제1, 2,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구한다.

가.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내지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1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모터 관련 사업에 이 사건 부품의 적시 공급이 필수불가결하고 이관절차에 최소 5~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원고에게 이관절차 진행에 턱없이 부족한 45일 내지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여 원고를 강박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을 임의로 지연하기도 하였다.

2)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이 사건 모터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2018. 6.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3,893,52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명목	지급일	지급액(원)
1	설비변상금 보상	2018. 6. 22.	500,000,000
		2018. 10. 31.	500,000,000
2	공급단가 인상분	2018. 7. 27.	21,342,420
		2018. 8. 29.	92,855,400
		2018. 9. 27.	96,307,200
		2018. 10. 31.	91,129,500
		2019. 2. 1.	182,259,000
		합계	1,483,893,520

3)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무효 내지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483,893,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2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 및 이 사건 약속에 의하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하여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최소 5~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고, 유예기간으로도 이관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한 45일 내지 약 2개월을 부여하였을 뿐인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및 이 사건 약속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고, 2018. 6. 22.경부터 2019. 2. 1.경까지 피고에게 설비변상금 보상 내지 공급단가 인상분 명목으로 합계 1,483,893,52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483,893,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등 참조).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18. 4. 25.경 및 2018. 5. 8.경 원고에게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단통보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 6. 19.경 이 사건 거래기간을 2018. 11. 30.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품 중 G의 공급단가를 12% 인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7, 8, 13, 16 내지 21, 23, 27, 35,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체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품의 공급단가 인상 관련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중단통보 약 5개월 전인 2017. 12. 5.경에도 이 사건 부품의 공급단가를 5% 인상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중단통보 이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품의 공급이 일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모터 생산 및 C의 F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실, ③ C가 2018. 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N, K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중단통보가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부터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니 약 2개월 이내에 이관절차의 진행과 함께 관련 설비를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거래의 계속을 전제로 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단가 추가 인상 등 거래 계속 방안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설비대금 지급 및 공급단가 인상 등의 조건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음에도, 피고는 약 1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사건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불규칙적인 물량 발주, 높은 불량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고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토로하였다. 또한 2017. 12. 5.경 이루어진 단가인상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하였던 단가인상률은 17.4%였으나 최종 합의된 단가인상률은 5%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단가인상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고의 수익성 악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자 누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고자 한 피고의 의사는 진정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중단통보 이후부터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의 임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부당한 이익 내지 폭리를 취할 의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중단통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의 체결 경위 및 목적에다가 피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발생하고 그 적자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중단통보 등의 행위를 공갈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이 사건 중단통보를 한 것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행사가 거래관념 등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이익 추구를 위한 해약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인 손실비용 보상 내지 공급단가 인상 등의 조건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계속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합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상 발주자인 원고의 지위와 회사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엄밀히 따진 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 사건 중단통보로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강박상태 내지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비용 보상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품의 공급단가를 일부 인상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거래기간을 2018. 11. 30.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을 2018. 11. 30.까지 공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모터 관련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N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당시 '이 사건 합의 후에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급부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채무자인 채무불이행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계약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에 의하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 중단에 앞서 유예기간으로 원고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사유로 든 '적자 누적'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 부여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유예기간으로 제시한 2개월 정도의 기간으로는 이 사건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처럼 그 이관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C 및 D 측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9, 48, 49, 67호증)에 '이 사건 부품 관련 이관절차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C 및 D는 협력업체인 원고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다. 나아가 그 기재내용은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추측 진술로서 그와 같은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C 및 D 측이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부품의 이관절차에 6개월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중단통보 전후로 피고를 대체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C 및 D로부터 업체변경의 승인을 받기까지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이관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소요된 기간은 이 사건 합의의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기간이 약 5개월 연장됨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의 소요기간이므로,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이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소요기간이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C 측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7호증)에도 '최종 고객사의 요청 및 합의에 따른 긴급 승인 등의 급박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가 C에 교부한 품질보증서약서(갑 제76호증의 1)에 '고객사 승인이 필요한 업체변경 건은 3개월 이전에 사전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품질보증서약서는 2022. 12. 29. 작성된 것이고, 달리 3개월의 사전신고 절차가 이 사건 중단통보 무렵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4. 8.경 이 사건 부품의 공급업체를 I 등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이관절차를 진행할 당시 그 이관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3개월에 불과하였다(원고의 2023. 8. 23.자 준비서면 3쪽). 나아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이 사건 부품의 공급업체를 점진적으로 다원화하고 있었고,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에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는 이관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관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 사건 부품의 공급업체를 I 등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을 때보다 단축될 만한 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시한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이 이 사건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를 완료하기에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제시한 2개월의 유예기간이 실제로 이관절차를 완료하기에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 부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즉,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은 제36조에서 거래를 중단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유예기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자 양산이관을 요청하면서 거래중단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때 원고는 2017. 11. 15.경 피고에게 피고가 약 2주(2017. 11. 13.부터 2017. 11. 30.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유예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하여 피고와 논의하거나 피고에게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그 내용상 원고나 원고의 고객사인 C 및

D의 의사 내지 경영상황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 내지 원고 고객사의 사정을 피고가 정확히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피고가 이관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여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은 원고나 피고 일방의 의사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거래 중단 통보 당시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유예기간을 제시하였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유예기간에 관한 조율 요청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닌 한, 그 유예기간이 실제 이관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다소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 부여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부품 관련 이관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고,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의 공급업체를 상당 부분 다원화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여기에 이 사건 중단통보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시한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유예기간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유예기간에 관한 조율 요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중단통보 이후 원고에게 이관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제시한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이 이관절차를 완료하기에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 부여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중단통보 당시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제36조의 유예기간 부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약속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회의 과정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참석한 K이 원고에게 이관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속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 진행에 대하여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 중단에 따른 이관절차를 완료하는 데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 협조义务的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중단통보 이후 원고에게 이관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에 기한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및 이 사건 약속을 위반하는 채무불이행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정, 판사 남승우, 판사 김나영

1) 변경 전 상호: J 주식회사

2) 이 사건 기본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제36조의 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래기본계약 당시 원고는 향후 계약 종료시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품 생산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여 마련한설비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